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58
----------	------

제출연월일 : 2025년 10월 2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2023년 7월 1일자로 한시기구로 설치된 「청사이전추진단」의 존속기간이 2026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에 따른 조직과 사무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행정기구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사이전추진단 설치 조항 및 사무내용 삭제(안 제2조의2 및 제9조제10호)
- 나. 청사이전추진단 존속기간 삭제(조례 제8692호 부칙 조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별첨 6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한시기구의 설치 · 운영)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다. 협의 :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음

라.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입법예고(2025.9.18. ~ 2025.9.29.) 결과 : 의견없음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부패영향평가 : 별첨 3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첨 4

- 학생인권영향평가 : 별첨 5

- 관계법규 : 별첨 6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0호를 삭제한다.

부칙(조례 제8692호, 2023. 5. 18. 공포)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한시기구의 설치 등) ① (생 략) <u>② 교육행정국에 청사이전추진단을</u> <u>두며,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u> <u>교육규칙으로 정한다.</u>	제2조의2(한시기구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9조(교육행정국) 교육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교육행정국)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u>10.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u>	<u><삭 제></u>
부칙 <조례 제8692호>	부칙 <조례 제8692호>
제1조(시행일) (생 략)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u>제2조(한시기구) 제2조의2제2항의</u> <u>청사이전추진단의 존속기간은</u> <u>2026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u>	<u><삭 제></u>

【별첨 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청사이전추진단 폐지에 따른 소관 사무의 내용 등 관계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주무관 최두환(02-2282-8643)

【별첨 3】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 담당	감사관	주무관	양구슬	
입안주관부서	행정관리담당관	통보일	2025. 9. 23.	
관련 조문	검토 결과		조치사항	
○ 제2조의2 (한시기구의설치등) ○ 제9조 (교육행정국) ○ 부칙<조례8692> 제2조(한시기구)	<p>○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30조(보조기관)부터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설치 등) 까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부터 제8조(실·국등 기구의 설치)까지 및 제12조(업무)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본 조례 일부개정은 한시기구인 청사이전추진단의 업무를 삭제함이 목적이므로 부패 유발 요인 없음</p>			“원안동의”

【별첨 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5A서울교육023			
정책명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행정관리담당관		
	담당자명	최두환	전화번호	02-2282-8643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민주시민교육과		
	담당자명	여인진	전화번호	02-399-9546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5년 09월 12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5년 09월 16일			

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09월 16일

【별첨 5】

자치법규 · 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자치법규 (단위사업)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담당자	직급	주무관	성명	최두환
평가담당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임종수(위원장), 목소희, 박지만, 여미애, 정명화, 지유빈				
해당조항	검토의견				검토결과	
제2조의 제2항 제9조 제10호 부칙 제2조	<p>본 조례 개정안은 한시기구인 청사이전추진단의 존속 기간 만료를 반영하여 조직 설치 및 사무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p>				원안동의	

관계법규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601호]

- 제7조(한시기구의 설치 · 운영)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량과 업무의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
-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추진의 자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